

인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구역) 변경 결정안

-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-

인 천 광 역 시

인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구역) 변경 결정안

-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-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03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0. 3.

제출자 : 인천광역시

1. 제안이유

-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-1번지 일원
- 부지면적 : 252,792m²
- 사업기간 : 2009년 ~ 2013년
- 사업비 : 4,194억원(부지매입비 1,582억원, 공사비 2,612억원)
-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
 - 용도지역 변경 : 자연녹지지역 ⇒ 준주거지역(252,792m²)
 - 용도구역 변경 : 개발제한구역 해제(252,792m²)

3. 입안내용

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
 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| 구분 | 면적(m ²) | | | 구성비 (%) | 비고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|
| | 기정 | 변경 | 변경후 | | | |
| 도시 지역 | 소계 | 286,205,531 | - | 286,205,531 | 100.0 | |
| | 준주거지역 | 11,707,711 | 증)252,792 | 11,960,503 | 4.18 | |
| | 자연녹지지역 | 274,497,820 | 감)252,792 | 274,245,028 | 95.82 | |

주) 기정 :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(2010년 2월말 현재)

－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| 위 치 | 용도지역 | | 면적(m ²) | 변경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기 정 | 변 경 | | |
| 남동구 남촌동 177-1번지 일원 | 자 연 녹지지역 | 준주거 지 역 | 252,792 | -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|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구역) 결정(변경) 조서

－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구역명 | 위 치 | 면 적 (km ²) | | | 비 고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
| | | | 기 정 | | 변 경 | |
| 변경 | 개발제한구역 | 남동구 남촌동 177-1번지 일원 | 74.914 | 감)0.253 | 74.661 | |

－ 개발제한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| 구 분 | 위 치 | 면적(km ²) | 변경사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변경 | 남동구 남촌동 177-1번지 일원 | 0.253 | -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|

4. 입안사유

-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의 협소한 부지, 시설의 노후화,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어 입안

5. 추진경위

- 2005. 8. 1 :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계획(안) 수립
- 2009. 5.22 :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위치조정 계획(안) 수립
- 2009. 6.30 :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(433,617m²)
- 2009.10.21 :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서면심의
- 2010. 3. 2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및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 공고·열람(14일간)

6. 각종영향분석

○ 사전환경성 검토

-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 작성
- 실시계획 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할 계획임

○ 교통성 검토

-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예측·분석하고, 특히 대상지 남측과 서측의 도로는 인천광역시 간선도로망(남북4축, 동서 6축)으로서 이동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
- 실시계획 인가 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행할 계획임

○ 경관성 검토

- 추후 사업진행 시에 개발계획의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경관계획(축방향, 스카이라인, 가로경관, 색채 등)과 건축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관계획(입면, 높이, 색채, 오픈스페이스, 단지 내 사인 등)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경관심의를 득할 계획임

○ 사전재해영향성 검토

-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(행정계획) 작성
- 실시계획 인가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(개발사업) 작성할 계획임

7.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

○ 청취기간 : 2010.3.2~2010.3.15(14일간)

○ 청취방법 : 일간신문(2개), 시 홈페이지, 남동구청 게시판

○ 청취결과 : 별첨 1

○ 관련부서 협의내용 : 별첨 2

8.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정성 검토

가.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적합여부

1) 해제대상지 선정기준 적합 검토

가)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 3년 이내 착공 가능 여부

⇒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

나) 대규모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

⇒ 인근에 영동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가 입지하고 있으며, 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대상지 남측과 서측으로 광로(비류길)와 대로(호구포길)가 기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기반시설 불필요

다)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선정 여부

⇒ 해당지역은 종합환경평가등급 3등급지로서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임

라) 20만㎡이상의 일단의 토지 또는 기존시가지 등과 연계 개발계획 수립 여부

⇒ 대상지 면적은 252,792㎡로 비류길과 호구포길로 정형화된 구역으로 설정

2) 해제대상지 제척기준 적합 검토

가) 도시 간 연담화(최소폭 5km 이상) 방지를 위하여 보존 필요한 지역

⇒ 인천 남동구의 중심부로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이 아님

나) 인접 시·군과의 심각한 갈등초래 여부 또는 인접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

⇒ 다른 시·군과의 연접지역이 아니며, 대로와 광로 및 구릉지로 위요된 지역으로 도매시장입지로 인한 상권의 쇠퇴 및 인접지역의 피해가 없음

다) 대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

⇒ 2009. 6. 30 이후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, 토지관리의 문제가 없는 지역임

- 라) 개발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 및 수질 등 환경적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
 - ⇒ 본 지역은 수림이 없고 및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 없어 제척기준에 해당하지 않음
- 마) 용수 확보가 곤란한 지역
 - ⇒ 대상지 남측으로 상수관로가 지나고 있어 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음
- 바) 인접지역의 재개발 곤란 또는 심각한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높은 지역
 - ⇒ 인접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사업이 없으며, 남동IC의 개선 및 별도의 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문제를 개선할 계획임

나.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경계선 설정 적합여부

1) 경계선 설정시 고려사항

- 가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등의 경계 및 도시계획시설
- 나) 하천, 구거, 옹벽, 절개지 및 급경사 등 지형·지세
- 다) 기타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

2) 경계선 설정 검토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| 현황 고려 부지 정형화 | |
| ② | 지적선 경계 | |
| ③ | 현행 도로 경계 | |
| ④ | 지적선 고려 부지 정형화 | |
| ⑤ | 광로3-6호선 도시계획도로 선형 반영 | |
| ⑥ | 대로1-13호선 도시계획도로 선형 반영 | |

9.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

가. 상위계획 검토

-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
 - 일반조정가능지역(남동구 남촌동 0.486km²)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반영(2007.7.16)
 - 별도의 조정대상지역 설정 없이 시도별로 개발제한구역 총량만 배분 제시(2008.11.3) : 인천시 해제가능총량 3.435km²
-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
 -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(2008.5)에서 도림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였고, 유통물류 시설 입지근거 반영

나. 관련법 검토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 -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(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1호, 3호)
: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
-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
 -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장래 개발수요, 개발순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토록 규정(3-1-1-8)
 - ⇒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요시설로 경매장, 물류시설동, 저온창고, 직판동 및 관리동 등이 계획되어 높은 건폐율이 요구됨
 - ⇒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(시장 결정기준)에 따라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, 준공업지역,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나
 - ⇒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고려할 때 준주거지역(건폐율 60%이하, 용적률 500%이하)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되며, 자연녹지지역(건폐율 20%이하, 용적률 80%이하)은 부적합하다 판단됨
 - ⇒ 농산물도매시장은 구역내 단일 시설로 계획되어 지구단위계획은 미수립

-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(2008.11.3 개정)
 -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 이행 여부
 - ⇒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(2009.6.30)

10. 주변여건 검토내용

| 구 분 | 현황 및 문제점 | 잠재력 및 계획방향 설정 |
|------|--|--|
| 입지여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에 위치 ○ 인천시청 남측으로 4.2km 지점 ○ 대상지의 남측으로 비류길, 서측으로 호구포길이 통과 ○ 대상지 남측으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건설중 ○ 서측으로 1.3km내에 지하철 1호선인 선학역이 입지하고 있어 경인선철도와 연계활용이 가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근 남동IC와 월곶IC를 통해 인천의 광역교통체계와 접근성 용이 ○ 인근 철도교통과 버스터미널 및 주요 이용객 밀집지에 대한 셔틀버스 운영 검토 ○ 시설입지에 따라 대중교통체계의 조정 필요 |
| 자연환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고는 대상지 전반적으로 10m 이하로 낮음 ○ 경사도는 10° 이하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지는 대부분 표고 및 경사도가 낮은 평탄지로 개발 용이 ○ 반면 북측과 동측은 산지로 위요되어 차폐가 가능하고 남측과 서측은 간선도로가 계획되어 농산물의 원활한 유출입이 가능 |
| 인문환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가 차지하고 있어 거주인구는 거의 없음 ○ 지목상 전,답의 비율이 89.7%(시장), 88.6%(도로)를 차지 ○ 대상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사업의 진행에 어려운부분이 있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지가 농경지로 건물의 보상 등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적음 |
| 도시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며,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과 해당시설에 걸맞는 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적정용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 |

11. 기 타 (재원 조달 계획)

가.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금 액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지매입비 | 158,152 | |
| 공 사 비 | 199,558 | 건축, 기계, 전기통신, 토목·조경공사 등 |
| 설 계 비 | 10,500 | |
| 감리비(CM비) | 8,402 | |
| 이 전 비 | 848 | |
| V.A.T | 41,940 | |
| 총 사 업 비 | 419,400 | |

나. 재원조달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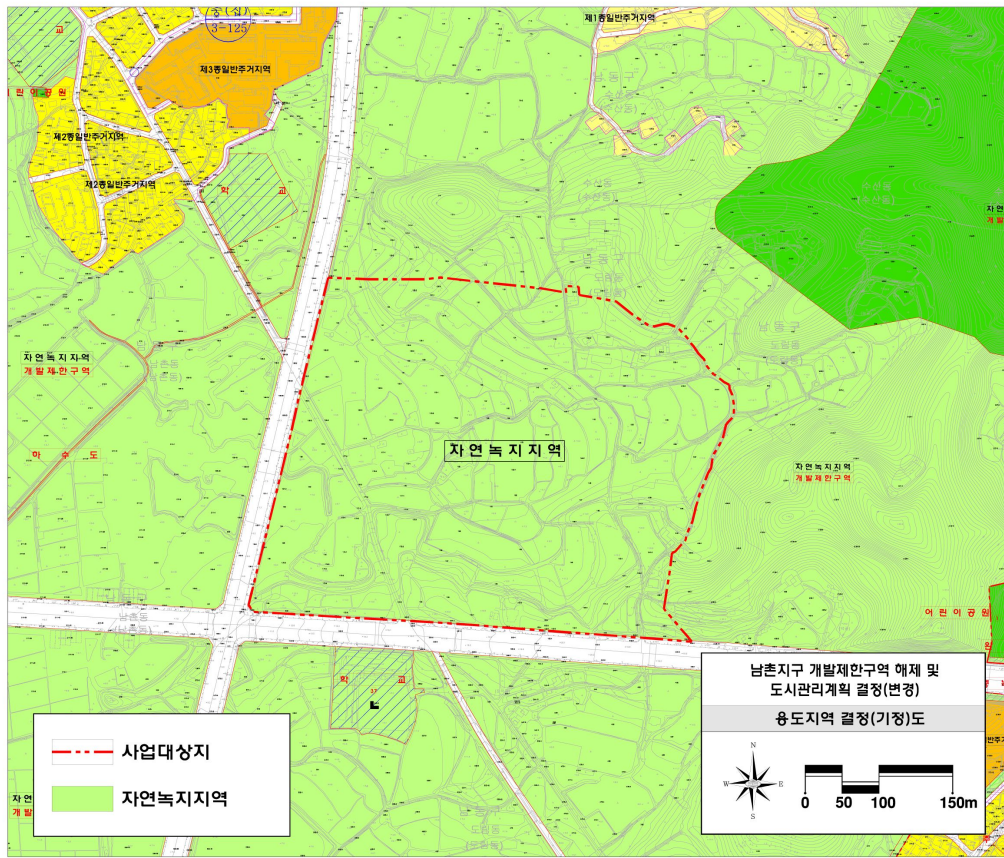
- 사업의 재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종전부지(구월 농산물도매시장)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자체조달 할 계획임.

○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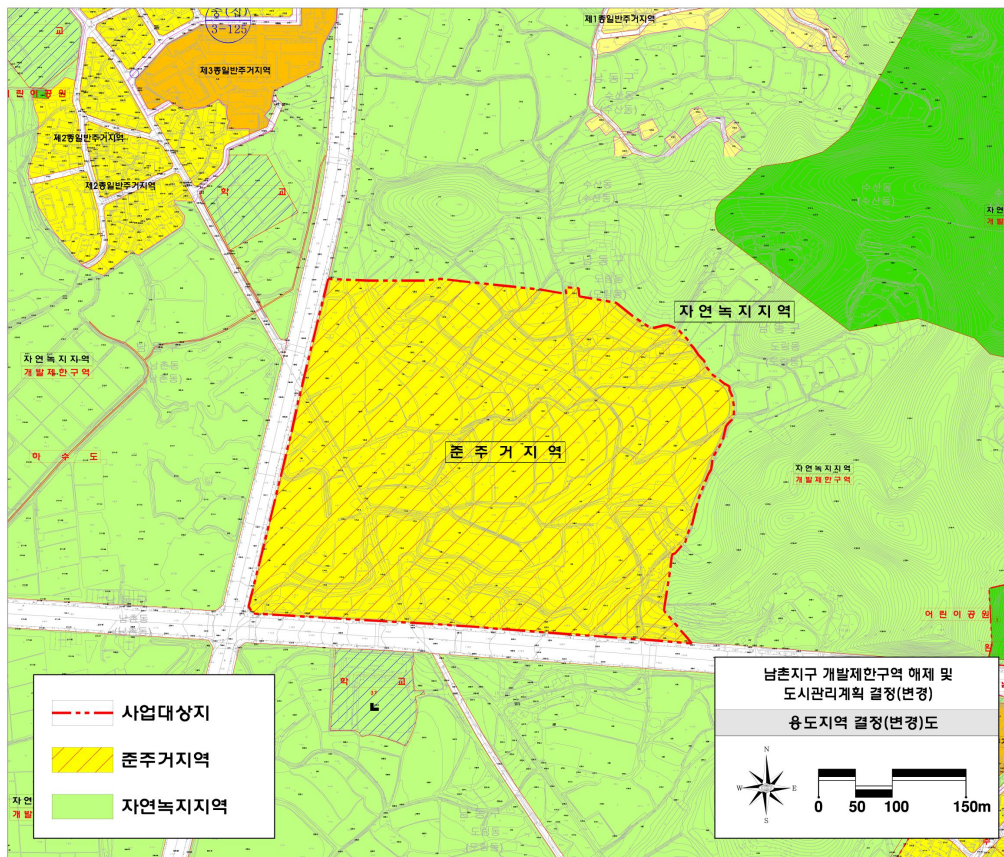
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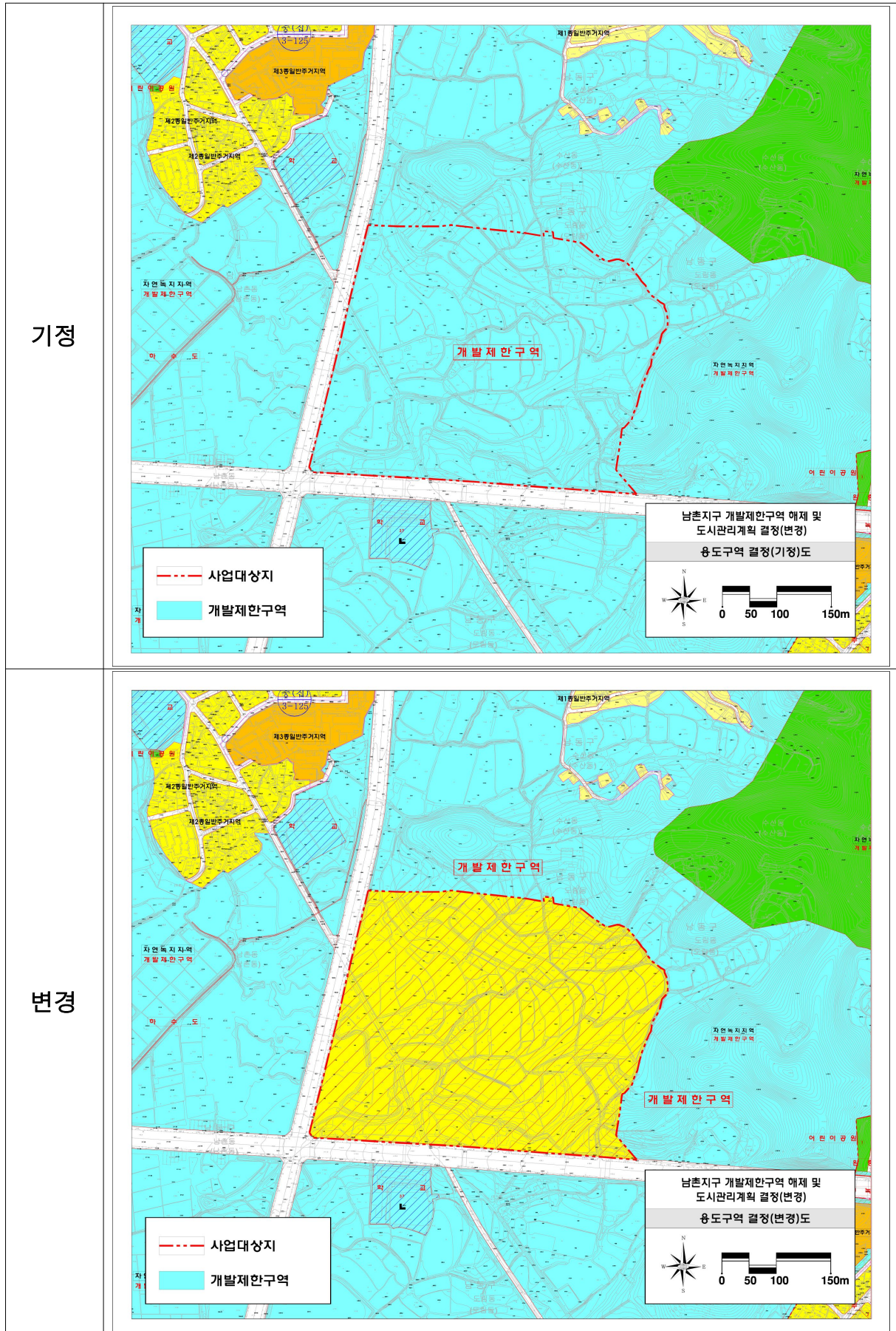
기정



변경



○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도



○ 조감도



< 별첨 1 >

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

| 성명 | 주소 | 제출의견 | 조치계획 | 반영여부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|
| 이화순 |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502-2 서우베스트빌 3차 202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촌동 177-1번지 일원의 토지를 시가 수용하는데 대하여 반대함 -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다른 곳으로 농산물센타를 건립한다고 하여 놓고 이제와서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. 개인의 재산에 불이익이되는 어떠한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음 ※ 남촌동 149-1, 149-2번지 소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과 주차시설부족, 물류시설 및 직판시설 부재 등 상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중인 사업 - 당초 예정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만 검토하여 510번지 일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및 사업비, 관리비 추가 소요 등의 도매시장부지로 부적합한 문제점 도출 -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177-1번지 일원으로 이전 -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 예정임 | 미반영 |
| 이춘자 |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8-1 신성아파트 301동 1704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단 옆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한다해서 그걸 믿고 4년 전에 여기를 샀음. 그런데 하찮은 이유로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러는지 나라의 신뢰가 이정도인지 몰랐다. 보존은 않고 파괴하려하니 절대 반대, 원래 읍기기로 한 곳으로 읍기세요. | | |
| 윤귀용 |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69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토지는 자손만대 살려한 것을 수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함 | | |
| 이종선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20-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3년도 노후대책으로 전 3,600㎡를 구입하여 매실 등 유실수를 재배하고 있던 중, 뜻밖에 농수산물시장 부지로 책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대반대 한다. 노후대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다. 왜 농수산물시장 부지가 갑자기 변경되었는지 그렇게 시정이 자주 변경되는 지 알 수 없다. | | |
| 신정희 | 울산광역시 남구 양능동 현대홈타운 204동 2306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대한다. 농산물시장은 남촌동 510번지로 지정되었는데, 왜 남촌동 177-10번지로 변경되었는가?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| | |

| 성명 | 주소 | 제출의견 | 조치계획 | 반영여부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|
| 고순옥 |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900-153 현대홈타운 108동101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후에 집짓고 텃밭 가꾸며 살기 위해서 2002년 땅을 매입함 - 현재도 받은 가꾸며 농사를 짓고 있음. 2002년 당시 땅을 매입시 공시지가의 5배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했는데, 시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행복권과 재산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심히 불편하고 불만임, 전적으로 반대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과 주차시설부족, 물류시설 및 직판시설 부재 등 상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중인 사업 - 당초 예정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만 검토하여 510번지 일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및 사업비, 관리비 추가 소요 등의 도매시장부지로 부적합한 문제점 도출 -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177-1번지 일원으로 이전 -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 예정임 | 미반영 |
| 안희태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37번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산물도매시장 예정지가(510번지 일대) 변경됨에 대하여 황당하여 이의를 제기함 - 소시민으로서의 삶의 보금자리인데 어느날 갑자기 도매시장 부지로 수용하겠다는 시 관계자의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만큼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힘 - 지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된 채 수용하겠다는 이런 시정업무에도 절대 협조할 수 없음 ※ 남촌동 146번지 소유 | | |
| 최용숙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삼익아파트 103동 701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 확정된 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, - 국민의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.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. 결사반대 함 | | |
| 박종녀 |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251-2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동공단 옆으로 농수산물이 이전한다고해서 땅을 샀는데 이제 와서 왜 이쪽으로 이전하는지 모르겠다 | | |
| 윤복위 |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1474-7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84번지 내 포도밭 경작을 하고 있음. 땅이 수용되면 그 돈으로 이 크기의 땅을 대토하기 어렵고 교통의 불편 등이 큰 이유가 되므로 수용을 반대함 | | |

| 성명 | 주소 | 제출의견 | 조치계획 | 반영여부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|
| 서정산 |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7동 1332-119 | - 노후에 농사를 짓고 세월을 보내고자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온다고 하니 절대반대 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은 기존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과 주차시설부족, 물류시설 및 직판시설 부재 등 상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중인 사업 - 당초 예정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만 검토하여 510번지 일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및 사업비, 관리비 추가 소요 등의 도매시장부지로 부적합한 문제점 도출 -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177-1번지 일원으로 이전 -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 예정임 | 미반영 |
| 오선희 |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정광아파트 102동 305호 | -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 구입. 농산물은 절대반대 함 | | |
| 최인영 |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정광아파트 102동 305호 | - 노후에 소일거리라도 하기위해 구입한 농토임. 어떠한 경우라도 농산물은 절대 반대함. 죽음을 가지고 반대함 | | |
| 조은호 |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더월드스튜디오 아파트 106동 1806호 | - 173-10번지 지주인데 나이 70 넘어 농사 좀 지을까하고 땅을 매입했는데, 수용이라니 전적으로 반대함 | | |
| 장병규 |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35-15 | - 반대함. 농사짓고 싶다. | | |
| 권혁환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현대아파트 403동 508호 | - 농사 질려고 반대함 | | |
| 방명식 | 인천광역시 남구 만수동 931-3 | - 계속 농사짓기를 원함 | | |
| 오순분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3-1 주공8단지 801동 2104호 | - 149번지 지주입니다. 4년전 510번지 일원 농산물시장이 수용된다하여 토지를 매입. 이제 나이도 먹고 조용히 농사나 지으면서 살려는데 웬말이나, 적극적으로 반대 | | |
| 유정숙 |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3동 856-26 | ○ 원래 공단 옆 부지에 할려는 대로 하고 새로 옮기는 것은 적극 반대 | | |
| 김연하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173-9 | ○ 도매시장 이전을 원래대로 하길 바람.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남동공단 옆으로 와야 교통, 환경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함 | | |

| 성명 | 주소 | 제출의견 | 조치계획 | 반영여부 |
|-----|---|--|---|------|
| 정은숙 |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408-1 서해아파트 102동 1302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천시민 입장(객관적)에서 “남촌동 177-1번지 일원”으로 이전 절대반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교통난 문제, 노후시설 등의 이유 부적합 : 15년도 사용 못함, 노후시설은 관리하면서 사용해야함 - 남촌동 위 지역으로의 이전도 마찬가지로 현상 봉착하게 됨. 오히려 더욱 교통문제를 극대화시키게 됨 - 인천시청과 5분 거리이며, 5분 거리 이내 재개발아파트 산재한 중심가에 혐오시설 이미지, 시설 아무리 좋을지라도 마찬가지 ○ 개인소유 지주입장에서 절대 반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제수용 절대반대 - 민주주의 국가 국민에 대한 절대차등 대우로 개인소유재산 강탈하여 시에서 부동산 투기하여 이득취하는 결과가 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은 경매장 및 주차시설 부족, 물류시설 및 직판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설부지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, - 신규 설립되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당초부지에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개발하겠으며, 인허가 추진과정에 관계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| 미반영 |
| 김경춘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반달마을 1832동 103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상의 문제와 주민의 입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통체계상 당초 부지가 양호, 현 부지는 교통체중 문제 예상 - 도시구조상 남촌동 덕골지역은 도림동까지 주택부지 개발하면 남촌동 일대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될 것 ○ 농민의 입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득이 수용시 주변지가와 같이 충분한 보상과 대체토지 교부 등 수용후 생활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의견 수렴 추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은 경매장 및 주차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설부지 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남촌동 177-1번지 일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고자 함 - 해당부지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(유통물류)로 계획된 내용에 적합하도록 시장시설로 개발 -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 예정임 | 미반영 |

< 별첨 2 >

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

○ 시 관련부서 의견

| 관련 부서 | 검 토 의 견 | 조치계획 | 반영 여부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----|
| 도 시 디자인 추진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지내 보행로 구간은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벽을 설치하고 복층림 조성으로 다양한 경관을 토록하고 주차장내 분리 녹지대 조성 검토 - 도로변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인접 도로와 동일 수종을 식재하여 노선별로 연계토록 하고, 도로변에 생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 보도 및 도로경관 향상 도모할 것 - 수목 식재 시 생육 가능한 상록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겨울철에도 녹음이 유지되는 자연경관 연출토록 하고 개발 예정지내 생육 수목은 최대한 재활용 조치 - 개발예정지내 녹지대 및 공원 조성 시 경계석보다 낮게 성토하여 우천 시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- 녹지공간은 마운딩을 조성하고 복층림 등 다양한 식재기법을 도입하여 흥미로운 경관을 연출 조치 - 개발예정지내 지상개폐기, 변압기는 보행과 안전에 지장 없도록 지중화 또는 녹지공간에 설치하고 차폐할 것 - 맨홀 재질은 바닥 포장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고 안내판, 가로등의 콘크리트 기초부분은 노면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할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후 사업진행 시에 본 개발계획의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경관계획(축방향, 스카이라인, 가로경관, 색채 등)과 건축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관계획(입면, 높이, 색채, 오픈스페이스, 단지내 사인 등)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경관심의를 득하시기 바람 · 경관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시가지· 야간경관계획 및 도시경관가이드라인,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 (자료출처:www.webhard.co.kr, ID = flyic, PW = 1234) · 경관시물레이션을 근경, 중경, 원경으로 보완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에 미치는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것 <p>※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관심의 득할 것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후 실시계획시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여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|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면적의 5만㎡가 넘는 사업으로 경관조례 제28조에 의거하여 개발 전·후의 사진을 기록하여 제출할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후 세부사업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후 제출하도록 하겠음 | | |

| 관련 부서 | 검 토 의 견 | 조 치 계 획 | 반영 여부 |
|----------|--|---|----------|
| 도로과 | <p>- 사업시 2017년 기준 10,730(대/시)의 통행유발로 주변 가로망(특히, 비류길 약 4.5~13.9% 통행량 증가, 호구포길 2.0~25.5% 통행량 증가)과 교차로(남동공단입구사거리, 남촌초교 입구, 큰방죽사거리)에 영향을 미치는 바 개선 방안 검토 시행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7년 호구포길의 사업미시행시의 평균통행속도는 8.16~45.03km/시, 서비스수준은 C~FF로 나타났으며, 사업시행시 평균통행속도는 7.29~37.16km/시이고, 서비스수준은 C~FF로 나타났음 - 또한, 비류길의 사업미시행시 평균통행속도는 10.49~33.07km/시, 서비스수준은 D~F로 나타났으며, 사업시행시 평균통행속도는 6.88~27.01km/시이고, 서비스수준은 E~FF로 나타났음 - 호구포길 및 비류길의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결과,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미시행시 대비 호구포길은 통행속도가 0.41~10.15km/시, 비류길은 3.61~6.06km/시 정도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, 주변 교차로의 신호현시 최적화방안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통행속도는 좀 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- 본 사업대상지의 침두시 유발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사업지 차량진출입구 및 접근로 상에 완화차로(1~2개차로)를 설치하여 본 사업지 진출입교통류와 통과교통류간 상충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- 한편, 「인천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(2007~2016년), 2007. 02, 인천광역시」에서 본 사업지(농산물도매시장)와의 인접한 큰방죽사거리와 남동공단입구사거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, 교통정비중기계획에서 제시하는 각 교차로의 대안을 시행할 경우 평균제어지체 감소 및 서비스수준 향상 등의 개선효과가 예상되므로 해당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| 부분 반영 |

| 관련 부서 | 검 토 의 견 | 조 치 계 획 | 반영 여부 |
|--------|---|--|-------|
| 도로과 | - 도시계획도로(소로)는 관할구청의 의견 반영하고, 기존 마을 진입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| - 기존 마을 진입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외곽으로 순환도로(8m)를 계획하여 제시하였음 | 반영 |
| | - 사업대상지 남측과 서측 도로의 이동성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| - 본 사업계획에 간선도로망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| 반영 |
| | - 사업지 진출·입로 및 소로2-A호선이 큰방죽사거리와 근접(약230~252m) 되는바 주간선도로의 교차로 간 최소 설치간격을 고려할 것 | - 본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구를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교차로 상에 형성하여 가로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, 현재의 진출입구 위치는 유지토록 하였음 | 부분 반영 |
| | - 사업지와 인접한 도로시설(보도, 자전거도로, 기타 시설물 등)은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도로관리청 및 시설물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할 것 | - 실시계획시 도로관리청 및 시설물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| 반영 |
| 교통 관리과 | - 타시도의 유사시설을 검토하여 주차동선체계, 노상불법주차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사업 대상지에 적용 검토 | - 실시계획시 원활한 주차동선체계가 위하여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를 적절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으며, 사업지 주변 진출입로 상에 CCTV 및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- 사업지 특성상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함에 따라 화물차 휴게공간, 편리한 하역공간 설치 및 승용차·보행자 등과 상충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검토 | - 실시계획시 사업지 내부에 화물차 휴게공간 및 편리한 하역공간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승용차 및 보행자의 상충방지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- 사업지구 내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에 대하여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주차안내시스템(PIS) 설치 검토 | - 사업지구 내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에 대하여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주차안내시스템(PIS)을 설치하겠음 | 반영 |
| | - 최근 대형승용차 보급 확대 및 RV차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일정비율을 중대형 주차구획(2.5m×5.1m) 설치 검토 |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

| 관련 부서 | 검 토 의 건 | 조 치 계 획 | 반영 여부 |
|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|
| 교 통 기 획 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부도로의 경우 식수대 폭원 등을 반영, 횡단구성(안) 재검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사업지 내부도로의 차로운영계획을 재조정하여 보도유효폭원 2.0m이상 및 식수대 폭원 1.0m를 확보하였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로 폭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, 2009, 국토해양부」에 의거 차로의 최소 폭원은 설계속도 70km이하 도시지역은 3.00m, 70km이상 도시지역에서는 3.25m로 규정하고 있으나,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 사업지 내외부 차로폭은 최소 3.0m 이상 확보토록 하였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하램프는 주요 교차점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접속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하램프는 주요교차점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접속하도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지별로 보행자 및 차량 진출·입 구간(지점)을 명확히 설정할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지 내 공원 남측 교차로 폐쇄 검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지내 공원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교차로는 현재 운영중인 교차로이며, 주변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 및 기존 마을 진출입을 위해 유지토록 하였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전거도로 및 횡단로, 안전시설 등 자전거 관련시설 개설 필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전거도로 및 횡단로,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여 자전거동선 연계 및 안전을 도모하였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교차로 신호운영계획은 교통량을 고려하여 설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지 주변의 교차로 신호운영계획은 각 접근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신호최적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| 반영 |
| 농식품 유통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변경,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) 변경 관련하여 농지편입 면적이 농업진흥지역 밖 20ha 이상 (25ha)으로 농림식품부장관과 농지분야 협의 할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를 득하겠음 | 반영 |

| 관련 부서 | 검 토 의 견 | 조 치 계 획 | 반영 여부 |
|-------|---|---|-------|
| 물 관리과 | <p><하수분야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·시공 시 하수도시설기준, 지침 등을 준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수처리구역에 반영되지 않는 미처리 지역으로, 인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(변경)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, 협의 될 수 있도록 물관리과와 별도 협의 필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생 오·폐수를 차집하여 폐수처리시설내에서 1차 처리하도록 계획 하였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수배제 유출계수는 토지이용계획(건물, 포장, 녹지 등)을 고려하여 적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수는 승기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수배제 방식은 우·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하수도 설치 시 해당 관리청과 협의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사업으로 공공하수도의 부득이한 이설이 발생시 사업자 부담으로 이설하며 이설시 하수도법의 행정절차 이행할 것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구역내(건축물)의 우수 및 오수 관로를 공공하수도까지 각각 분리 접합할 것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의서류 본권 73쪽 계획오수량 산정 기준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오수량 원 단위 적용 재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획일최대 : 계획 상주·상근·이용 인구 · 계획시간최대오수량 : 계획일최대 오수량의 1.5배 · 지하수유입량 10% 적용 | | |
| | <p><오수분야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미리 해당구청에 신고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등 제반규정 준수할 것 - 우수 배관로 설치계획 등 도면 제시 - 공사 시 수밀시공으로 우수 누수 및 역류현상으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방지대책 수립 - 공사 시 현장 작업인부에 대한 우수 발생량 파악 및 처리대책 강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

| 관련 부서 | 검 토 의 건 | 조 치 계 획 | 반영 여부 |
|----------|--|--|----------|
| 물 관리과 | <p><지하수분야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시 사전에 구청에 신고 - 공사 진행중에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대책 수립 시행하되, 지하수 불용공(방치공) 관리방안에 따라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처리(발견시 구청에 신고) - 유출 지하수 저감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p><빗물분야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 사용량 저감 등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하여 빗물과 유출지하수 연계활용(조경, 화장실, 청소용수 등) 방안 강구 - 공원, 화단, 녹지대 등의 중앙을 오목형으로 조성하여 빗물침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, 단지 내 포장구간 빗물침투 측구 설치하여 물 순환 건전화 유도 -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건축 시 빗물 시설 설치할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p><수질분야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생태, 하천 등의 자연환경 면밀히 조사·검토하여 수환경 및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반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지구와 수계를 이루는 하천은 없으며, 공사시에는 침사지를 설치하고, 운영시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성 검토, 수질분야 영향예측, 저감방안 항목 강우시 비점 오염원(토사, 공사장 각종 폐유 등)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저감계획 수립 · 공사시 발생한 폐유가 강우 및 부주의로 인근 하수구나 하천에 유출시 방제계획 및 기자재 확보 계획 수립 · 빗물에 의한 유분이 배수로 및 주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에 차폐막 설치 · 강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지계획 등 비점 오염원 저감계획 수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지구가 도심지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지구내에서 오일교환 및 주유등은 지양하고, 가능한 주변지역의 주유소나 차량정비소 등을 이용할 계획임 또한, 공사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,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은 환경영향평가지 구체적인 영향을 검토한 후 수립토록 하겠음 | 반영 |

| 관련 부서 | 검 토 의 견 | 조 치 계 획 | 반영 여부 |
|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|
| 공 원 녹지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지내 편입되는 공익용산지(4,654㎡)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지에서 지역 등에 관하여 남동구청장과 협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동구청 산지전용협의를 득하겠음 | 반영 |
| 공 원 녹지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목의 생육에 유용한 표토의 보존 및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토지의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수형이 양호하고 이식 가능한 수목과 기존 시설내의 수목은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과 사전 협의할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하여 협의를 득하겠음 | 반영 |
| 재 난 관리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요청서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 사본과 참여기술자 현황을 첨부하여 10 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포함한 검토협의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음 | 반영 |

○ 남동구청 의견

| 관련 부서 | 검 토 의 견 | 조 치 계 획 | 반영 여부 |
|--|--|---|-------|
| 문화홍보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재보호법 제91조(문화재지표조사)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(문화재지표 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)에 의거, 사업면적이 30,000㎡이상의 건설공사시 실행하여야 함 - 동 사업부지는 252,792㎡이므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하겠음 | 반영 |
| 환경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대기환경보전법』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 지발생사업의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해당여부 확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소음진동규제법』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에 의한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준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시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 기준에 의거하여 소음 65dB(A), 진동 65dB(V)를 준수하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함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하수도법』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여야 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설계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, 농수산물 공판장은 악취방지법에 악취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악취방지에 대한 적정조치를 하여야 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생 폐기물등으로 인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등을 계획지구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, 시설은 지하화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할 계획임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대기환경보전법』 · 『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』 · 『소음·진동 규제법』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 적정한 방지계획과 함께 허가(신고)를 득하여야 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대기환경보전법』 · 『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』 · 『소음·진동규제법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은 없음 | 반영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폐기물관리법』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하며, 특히 농산물 공판장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와 학교시설 및 음식점이 있어 특히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큰만큼 엄격한 악취방지 시설 등 악취저감 방안을 반드시 강구 하시기 바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생 폐기물등으로 인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등을 계획지구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, 시설은 지하화하여 악취의 확산을 방지할 계획임 | 반영 | |

| 관련 부서 | 검 토 의 견 | 조 치 계 획 | 반영 여부 |
|----------|--|--|----------|
| 건설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결정으로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(소1-5호선, 폭 10m)는 우리구에서 2007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한 시설로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환매권) 규정에 의거 환매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, 대체시설인 도로(소2-A)의 폭원은 장래의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폭12m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환매권) 및 시행령 제49조(공익사업의 변경통지) 규정에 의거,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후 그 고시내용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음 - 소2-A 도로는 본 사업 시행시 기존 마을 진출입로가 단절됨에 따라 외부 도로와 기존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로, 차량통행량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계획(8m)을 유지토록 하겠음 | 부분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지 남측(비류길) 및 서측(호구포길)에 계획된 완화차로 설치로 확폭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확정되는 단지배치계획과 교통영향분석, 개선대책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| 반영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지측 도로 확폭으로 인하여 연장설치가 필요한 도림고교 앞 보도육교에 대한 상세계획(설계도면)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시 협의하여야 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| 반영 |